

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4. 10. 18.(금) 06:00

## 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개정방안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 <그간의 경위>

- •8.7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TF(2차)에서 제도개선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침 발표
- •8.23 입점업체 간담회, 8.26 플랫폼업체 간담회
- 8.29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안(복수안) 마련
- •9.9 당정협의 실시 후 제도개선안 발표
- 9.23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그간의 협의·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먼저,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된 법 적용 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 9.9 발표한 개정방안(복수안) 검토 결과>

구 분	개정방안(복수안)		
법 적용대상	제1안	연간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원 이상	√
	제2안	연간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조원 이상	
정산기한	제1-1안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제1-2안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
	제2안	月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별도관리	제1안	판매대금의 100% 별도관리	
비율	제2안	판매대금의 50% 별도관리	√

#### ① 법 적용 대상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직전연도 연간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하였다(제1안).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 ② 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제1-2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안 중 보다 완화된 정산기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하여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ex.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③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제2안).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 ④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30%→50%).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다.

<붙임>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사 한 기 기 기 기	책임자	과 장	김태균 (044-200-4960)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용남 (044-200-4961)
			사무관	최유빈 (044-200-4963)







# 붙임

##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정산기한 준수, 대금별도관리, 그 밖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의무 부과

- □ (법 적용대상) <sup>①</sup>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sup>②</sup>일정규모 이상의 <sup>③</sup>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 ① 숙박, 여행서비스 등 용역도 포함\*하되,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제외
    -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 포함
  - ② 전년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적용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규모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
  - ③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sup>\*</sup>를 원용
    - \* (전상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정산 기한**) 전상법상 **청약철회 기한 만료일**(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등)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함
  - 기한 설정으로 인한 실질적 **개선 효과**와 정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업계 부담**, 법 적용 예상 업체들의 **정산관행**(산술평균 19일) 등을 고려
  - ㅇ 다만, 위 기한 내 정산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

-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
- □ (**별도 관리**)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 o 정산기한 단축으로 **미정산 피해소지**가 **완화**되는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 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 \*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산시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
- □ (그밖의 규정)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거래계약서(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준용
  -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 준용
    - \*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 □ (시행시기·경과규정)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유예 후 시행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정산기한 단축 및 별도관리 비율 증가
    - \* (정산기한) 구매확정일로부터 40일(시행시~1년) → 30일(1년~2년) → 20일(2년 이후) (별도관리 비율) 30%(시행시~1년) → 50%(1년 이후)